

제 5 절 세무행정

- I. 세 정 일 반
- II.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III.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I 稅政一般

1. 현 황

가. 과세물건 현황

- ▷ 토지 : 65.19km² 【주거지역 : 8.18km² / 자연녹지 : 55.32km² / 기타 : 1.69km²】
- ▷ 주택 : 61,774동 【단독주택 : 22,047동 / 공동주택 : 25,900동 / 기타 : 13,827동】
- ▷ 차량 : 74,169대 【관용 : 177 / 비영업용 : 66,718 / 영업용 : 7,274】
- ▷ 법인 : 1,710개소 【건설 : 454 / 제조 : 412 / 서비스 : 187 / 여객,화물 : 121 / 기타 536】
- ▷ 기타 : 선박 【21척】, 골프회원권 【2,352명】, 면허업종 【703종】

나. 세무공무원 현황

구 분	직급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 원		45	1	7	11	20	4	2
현 원		43	1	7	12	19	2	2
증 감		△2	0	0	1	△1	△2	0

2. 지방세

가. 조세의 분류

조세	지방세	구 세	재산세, 면허세	보통세
			사업소세	목적세
		광역시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보통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국 세	내국세, 관세	국가 일반재원 조달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개발재원 조달	

나. 주민 1인당 담세액

구 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인 구 수(명)	270,871	274,223	274,627	285,760	292,187	294,560
지방세액(천원)	104,924,000	99,209,000	144,488,000	104,219,334	92,046,825	77,051,309
담 세 액(천원)	104,924,000	99,209,000	144,488,000	104,219,334	92,046,825	77,051,309

※ 1인당 담세액 = 결산시점의 징수액(시세 포함) ÷ 결산시점의 인구수
 단, 2005년도 지방세액은 2005.03월 현재 세입예산액 ÷ 3월 현재 인구수

Ⅱ 2004年 主要業務 推進實績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자치구세입 징수실적 대비 7,807백만원 증수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3년도		증 감 (징수액)	비 고
	목 표 액	징수액	목 표 액	징수액		
총 계	123,543	133,695	129,391	125,888 (144,488)	7,807 (-10,793)	※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중 재산매각수입 으로 인한 순세계잉 여금 18,600백만원은 특수요인으로 제외 ()안은 포함시 금액
지방세	14,344	15,504	13,159	14,664	840	
세 외 수 입	30,061	39,140	39,857	34,875 (53,475)	4,265 (-14,335)	
지방교부세	3,365	3,355	1,750	1,750	1,605	
지방양여금	258	258	284	284	-26	
조정교부금	32,082	32,010	37,142	37,142	-5,132	
보 조 금	43,433	43,428	37,199	37,173	6,255	

※ 매년도 결산일 기준

○ 체납세 발생 최소화와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노력 결과

전년대비 체납세가 2.4%의 감소하였으며 면허세 등 정기분 대중세목의 납기내 평균징수율이 0.8% 증가시켰음.

○ 지속적인 보유세 및 거래세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

건물과표는 1㎡당 전년도 170천원에서 180천원으로 5.8%,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은 전년도 40.0%에서 42.5%로 2.5%P 인상하여 과표를 현실화 하였고, 우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동래베네스트골프클럽은 전년도 99백만원에서 108백만원, 부산칸트리클럽은 전년도 125백만원에서 135백만원으로 각각 9% 및 8% 인상하였으며,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처분 조치로

부동산 소유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봉급생활자에 대한 급여압류,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조치로 24,830건에 5,325백만원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2회 설정하여 각종 징수대책보고회 3회 개최, 세외수입 담당자부서별 체납세 경진대회 1회 개최하는 등 5,707건에 1,209백만원을 정리실적을 거두었고

○ **성실납세 유도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의 세무조사, 토지·건축물의 과세표준 적정여부 일제조사, 비과세·감면의 적정여부, 부동산 취득법인의 취득·등록세의 신고납부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971백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으며, 특히 건설용지 취득법인의 대물보상 지급분이나 공사금액의 신고누락 사실 포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공평과세와 근거과세를 실현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 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를 구현함

○ **등기소 현장민원실 운영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점자안내문 발송 등의 납세편의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법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에 대한 사전구제의 필요성과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사전에 차단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무정보 사전예고제(취득세 납기한 도래일 1주전 납부안내엽서 발송 등)를 운영함**

Ⅲ 2005년 주요業務 推進計劃

○ 부서운영방침으로는

- ▷ 자주재원 확충노력 지속 추진
- ▷ 지방세정의 공평·신뢰성 확보
- ▷ 선진세정을 위한 전문성 제고
- ▷ 구민감동 세정서비스 제공을

주요업무 방침으로 설정하였다.

○ 今年度 自治區 歲入目標로는,

2004년결산 대비 14,494백만원 감소된 109,049백만원을 歲入目標로 책정하였고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일반회계			2004년도 목 표 액	비 고
	목 표 액	2004대비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109,049	-14,494	88.3	123,543	
지 방 세	15,666	1,322	109.2	14,344	
세 외 수 입	21,304	-8,757	70.9	30,061	
지 방 교 부 세	5,078	1,713	150.9	3,365	
지방양여금	0	-258	0.0	258	
조 정 교 부 금	31,773	-309	99.0	32,082	
보 조 금	35,228	-8,205	81.1	43,433	

※ 기준일 : 2004목표액은 결산시점, 2005년 목표액은 2005.3월 현재임

○ 주요증감사유는

세외수입 이월사업비가 2005.03월 현재 확정되지 않아 금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지 못한 부분과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감소, 지방양여금제의 폐지를 들 수 있겠으나 국시비의 사업규모 증감에 따라 의존수입도 같이 증감될 것으로 예상됨

○ 세입여건은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재산세 세입이 약20% 줄어들 것으로 추계되어 세입목표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

세로 징수한 세입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은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징수되므로 올해 중 의존수입으로 교부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됨

○ 2005년 주요 달라지는 지방세법으로는

-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율을 25% 경감(1.5%적용)하고
- ▷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
 - 과세물건 : 토지, 건축물, 주택
 - 건물과 토지를 통합평가하여 낮은 세율로 “재산세”로 통합과세
 - ⇒ 7월부과
 - 주택분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세액의 1/2 (0.15~4%)
 - 건물분재산세 과세표준액(0.25~4%)
 - ⇒ 9월부과
 - 주택분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세액의 1/2 (0.15~4%)
 - 토지분재산세 과세표준액(0.2~4%등)
- ▷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구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05. 4. 30일에 고시)으로 산출하며
- ▷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차량은 세율을 조정하여 승용자동차로 과세 전환 하나 급격한 세액 인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차별('05년 33%, '06년 66%, '07년 100%)로 적용함(시세감면조례로 인상세액의 50%감면)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추진

- ▷ 2004년 부동산 취득법인의 전수조사와 토지·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조사, 탈루·은닉세원의 발굴하여 조세정의 확립과 더불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 ▷ 비과세·감면의 적법성 및 현황조사를 통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 ▷ 체납세에서는 체납세 특별징수팀인 『LOT 100』을 상시 운영하여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 일소에 주력하고, 각종의 체납처분 조치 및 행정규제를 강화하며, 특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부도법인차량일제정리」 및

「자동차 인터넷 공매제도」를 활성화하고 광역단위의 자동차번호판 영
치에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세 일소는 물론 자치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
고자 함

○ 지방세정의 공평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 ▷ 납세자 권리헌장 상의 각종의 권리를 보장 존중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제, 지방세 이의신청 등 각종의 권리구제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
영하여 납세자 입장에서의 행정 및 구제노력을 강화하며, 「세무정보 사
전예고제」 실시로 납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며
-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 개정된 법령에 대한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발
송, 인터넷 홈페이지, 유선방송 등 지역단위 언론매체의 활용과 각동의
통장회의시 설명회 개최 등 대민직접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 ▷ 실무경험 많은 세무공무원을 통한 납세자보호창구 및 납세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세무상담 기능을 확충하여 앞서나가는 세무행정을 구현코자 함

○ 선진세정을 위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 ▷ 외부·상급기관 교육 적극참여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 ▷ 「아이디어뱅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정을 위하여 주기적
인 업무연찬활동을 연중실시하며
- ▷ 직무능력향상과 세무정보교환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코자 함